

감정평가서

건명	지양석재 주식회사 소유물건(2025타경3419)
의뢰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법보좌관 김범석
감정서번호	CT2510-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사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센텀감정평가사사무소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장은진

장은진



감정평가액	칠천일백만원정 (₩71,000,000.-)			
의뢰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법보좌관 김범석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경매2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지양석재 주식회사 (2025타경3419)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10.10	2025.10.10	2025.10.13

감정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1개호	구분건물	1개호	-	71,000,000
	이	하	여	백		
합계					₩71,000,000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유소희

유소희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중근빌라 제씨동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승학로224번길 110	260-398	공동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1층	66.19			
				2층	66.19			
				3층	66.19			
				4층	66.19			
		지하1층	79.67					
		대	125					
		(내)						
		철근콘크리트조 제101호	32.08	32.08	71,000,000	비준가액 (집합건축물 대장상 공용부분 포함면적 :40.75㎡)		
		1. 소유권	1,479					
	----- 대지권	----- 12,500	14.79					
	합 계					토지·건물 토 지 : 21,300,000 건 물 : 49,700,000 ₩71,000,000.-		
			이 하	여	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소재 “부산보건대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하는 종근빌라 제씨동 제1층 제101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부동산경매목적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의 기준

(1) 감정평가의 기준 및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제반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으며,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본건 평가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기준시점


본건 평가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10월 10일임.

(3) 실지조사 실시기간

본건의 물리적 현황 및 시장분석 등을 위한 실지조사는 2025년 10월 10일 실시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대상물건의 개요

	소재지 건물명, 층,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260-398 종근빌라 제씨동 제1층 제101호		
	도로명주소	사하구 승학로 224번길 110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용승인	2001.04.20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건물규모	지하1층/지상4층		
	면적(㎡)	전유	32.08	
		공유	8.67	
전체		40.75		
대지권		14.79		

4. 감정평가의 조건

별도의 감정평가 조건은 없음.

5. 기타 참고사항

- (1) 본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의 규정에 의해 건물의 구분소유권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이 일체성을 갖는 물건으로 건물(구분소유권)과 토지(소유권대지권)를 일체로 하여 가격형성 되는바 건물(구분소유권)과 토지(소유권대지권)의 개별적인 평가가 곤란하나, 귀 법원의 요청에 의거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평가명세표상에 병기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본건은 현장조사시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로 내부확인이 곤란하여 인근 유사물건 및 관련공부와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재확인이 요망됨.

(3) 본건 평가시 인용 또는 참고한 사례들은 개인정보보호 관계로 호번호에 *처리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I. 감정평가액의 산출과정

1. 감정평가방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소유권대지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해 거래사례비교법 이외의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를 생략하고,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평가전례 등 참고가격자료를 활용하여 감정평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2. 거래사례비교법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산식은 아래와 같음.

$$\text{평가액} = \text{거래사례가격} \times \text{사정보정치} \times \text{시점수정치} \times \text{가치형성요인비교치}$$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1) 본건 거래사례 [출처:감정평가정보체계(한국부동산원)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건에 대한 최근 3년 이내 거래사례는 없음.

(2) 인근 유사 부동산 거래사례 [출처:감정평가정보체계(한국부동산원)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산광역시 괴정동)

기 호	소재지	건물명 동/층/호	면적(㎡)		거래가액 (단가:원/전유㎡)	거래시점 (사용승인)
			전유	대지권		
A	괴정동 260-***	성광빌라 제에이동 제1층 제***호	77.16	21.36	150,000,000 (@1,944,012)	2020.11.03. (2003.05.10.)
B	괴정동 381-**외	스타시티 제B동 제1층 제***호	11.7096	7.234	27,000,000 (@2,305,800)	2025.05.14. (2019.02.28.)
C	괴정동 469-*	에르모빌 제1층 제***호	47.15	27.93	110,000,000 (@2,332,979)	2021.04.26. (2011.08.29.)
D	괴정동 87*	썬빌리지 제1층 제***호	197.1325	81.5984	330,000,000 (@3,548,720)	2023.08.29. (2003.01.22.)
E	괴정동 107*-*	하림빌라 제1층 제***호	45.18	24	95,500,000 (@2,113,767)	2021.11.22. (1991.10.23)
F	괴정동 1207-**	하우타스빌 제1층 제***호	40.82	12.42	70,000,000 (@1,714,848)	2020.02.03. (2003.01.09.)

(3) 비교 거래사례의 선정

본건인근의 위치적·물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부동산 내 거래사례로서 본건과 비교가능성이 높고 최근 시가수준을 가장 적절히 반영한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인 <거래사례 A>를 선정함.

(4) 사정보정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보임.(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시점수정

1) 적용기준

본 건의 시점수정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로 평가하고 있는 바,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하는 "상업용부동산 자본수익률(집합상가)"을 활용하여 산정하였음.

기 간	변동률(%)	비 고 (부산광역시 집합상가)
2020.11.03. ~2025.10.10	5.361% (1.05361)	$(1+0.0061*59/92)*(1+0.0039)*(1+0.0096)*(1+0.0085)$ $* (1+0.0101)*(1+0.0066)*(1+0.0073)*(1+0.0081)$ $* (1-0.0032)*(1-0.002)*(1-0.0007)*(1+0.001)$ $* (1+0.0011)*(1+0)*(1+0.001)*(1+0.0013)*(1-0.0016)$ $* (1-0.0016)*(1-0.0004)*(1-0.0004*102/91) \approx 1.05361$

※2025년 3분기 자본수익률이 미고시되어 직전분기인 2025년 2분기의 자본수익률을 연장 적용함.

2) 시점수정치 결정

본건의 시점수정치는 상기 산출근거에 의거 결정함. (1.0536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6) 가치형성요인 비교

요인구분	세부항목(상업용)	비교치	비고
단지외부요인	고객 유동성과의 적합성,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배후지의 크기, 상가의 성숙도, 차량이용의 편의성(가로의 폭, 구조 등) 등	1.00	대체로 대등함.
단지내부요인	단지내 주차의 편리성, 건물전체의 공실률, 건물 관리상태 및 각종 설비의 유무, 건물전체의 임대료 수준 및 임대비율,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건물의 규모 및 최고층수 등	1.00	대체로 대등함.
호별 요인	층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주출입구와의 거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와의 거리, 향별 효용,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호별 이용상황 등	1.08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전유면적의 크기에 따른 선호도 등에서 우세함.
그 밖의 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대등함.
누 계		1.08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결정

일련 번호	사례단가 (원/전유㎡)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	산정단가 (원/전유㎡)	전유면적 (㎡)	산정가액 (원)	시산가액 (원)
가	1,944,012	1.00	1.05361	1.080	2,212,089	32.08	70,963,815	71,000,000

※ 시산가액은 10만원단위에서 반올림하였음.

III. 참고가격자료

1. 인근 유사 부동산의 가격수준

가격수준	본건 인근 동유형 및 유사물건의 경우 위치 등 입지조건, 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정도 부대설비, 층별, 위치별, 향별 효용도 등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으며 본건의 경우 @2,000,000원 ~ @2,200,000원/전유㎡ 내외 선으로 탐문 조사됨.
------	--

2. 본건 평가사례

본건에 대한 최근 3년 이내 평가사례는 없음.

3. 인근 평가사례 [출처:한국감정평가사협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호	소재지 건물명 동/층/호	용도	면적(㎡)		평가액 (원/전유㎡)	평가시점 (사용승인)	평가 목적
			전유	대지권			
a	괴정동 10*** 괴정자유2차아파트 제상가1동 제1층 제***호	생활 편익 시설	160.32	68.24	260,000,000 (@1,621,000)	2025.04.08. (1997.02.01.)	담보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경매낙찰가율 (2024.10.10. ~ 2025.10.10.)

구분		부산			사하구			괴정동		
기간	용도	낙찰 가율	평균 낙찰가율	낙찰 건수	낙찰 가율	평균 낙찰가율	낙찰 건수	낙찰 가율	평균 낙찰가율	낙찰 건수
1년간 평균	근린 상가	51.63%	46.00%	216	38.09%	39.85%	2	35.97%	35.97%	1
6개월 평균	근린 상가	51.21%	47.14%	101	35.97%	35.97%	1	35.97%	35.97%	1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IV.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1. 감정평가액의 결정

본건 평가대상 부동산의 입지적 여건, 이용상황, 제반 공법상의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본건 평가 목적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일련 번호	평가대상	전유면적(㎡)	대지권(㎡)	감정평가액(원)	비 고
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260-398 종근빌라 제씨동 제1층 제101호	32.08	14.79	71,000,000	-
합 계				₩71,000,000.-	-

2. 감정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인근 부동산 탐문조사에 의한 가격수준,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등을 고려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소재 "부산보건대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하는 종근빌라 제씨동 제1층 제101호로서, 주위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부산도시철도1호선"괴정역"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4층 건물 내 제1층 제101호로서
외벽 : 타일붙임, 몰탈위 페인팅 마감
창호 : 샷시창 구조임.

(4) 이용상태

집합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으나 폐문부재로 내부확인은 못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

(5)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남하향 경사지대에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 및 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상대보호구역(동주대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임대관계 : 미상임.
- 2) 기 타 : 본건은 현장조사시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로 내부확인이 곤란하여 인근 유사물건 및 관련공부와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재확인이 요망됨.

광역 위치도



소재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260-398, 종근빌라 제씨동 제1층 제1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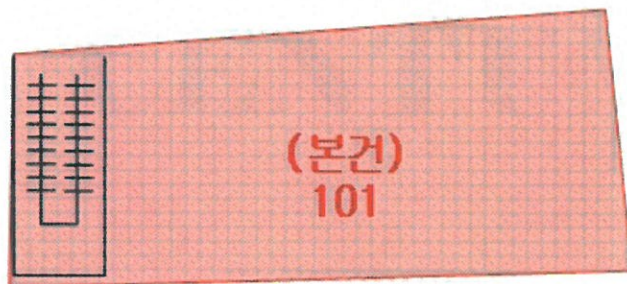


호 별 배 치 도



<None Scale>

종근빌라 제씨동 제1층 호별배치도



사 진 용 지



주위전경



본건전경

사 진 용 지



본건1층전경



본건대문